

#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 계획서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3-9호, '23.1.31.)

## 2. 개정이유

- 냉장식품의 매장 직반입 등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
- 보세판매장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물류 흐름 원활화 제고

## 3. 주요 개정내용

###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

-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에 대해 매장 직반입 허용(제6조)
  - \* (원칙) 보관창고에 판매물품 반입 후 매장 반입
-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 ‘재고조사’와 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0조 및 제22조 ‘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’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‘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’ 사항에서 제외

### 보세판매장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전자적 처리 방법 도입

-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 시 전자적 방법(QR코드 등) 이용 허용(제14조)
- 인도자의 미인도 물품목록 제출 의무를 전산 확인 등록 방식으로 변경(제18조)

□ **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절차 개선**

- 입·출국장 면세점의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에 따른 판매 신고 절차 마련(제9조)
- 환불된 물품에 대해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허용(제19조)
  - \* (기존)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만 직반입 가능
- 서류 출력이 필요한 필증의 보관 의무를 삭제하여, 서류를 출력 없이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(제30조)

**4. 신·구조문 대조표 : “붙임”**

**5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사항 없음”**

**6. 시행일자 : 2024. 2. .**